

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 심사보고서

2024. 6. 19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. 5. 24.(금)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28.(화)

○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24. 6. 13.(목)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: 2024. 6. 18.(화)

다. 상정일자 :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4. 6. 1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[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전 미 경]

가. 제안이유

「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2항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제출함

나. 제출내역

○ 2023년 12월 31일 고향사랑기부금 확정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수입이

증액되어 계획변경이 필요함

- 기금전입금 112,950천원, 기타수입 71,853천원, 예치금 183,517천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,286천원을 감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[전문위원: 권하나]

1. 검토보고

- 동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 변경하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마포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방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고향기부법')이 제정·시행됨(2021.10.19., 시행 2023.1.1.).
 -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함.
- 동 법이 시행된 후(2023.1.1.) 기부금이 모금되었으나, 마포구는 2023년 12월, 「2024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운용계획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(제265회 제2차 정례회/2023.12.20.)을 받았음. 이에 첫째 연도 기금 설치 전의 기부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적립되었기에, 적립된 기부금을 기금 계좌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, 당초 2023년 기부금 목표액보다 기부금이 초과 모금되었는 바, 이에 2024년 기부금 목표액을 현 추이에 맞게 기부금 수입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- 변경된 2024년도 기금 규모는 2억 3,2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,351만 7천원 증액되었음.
- 수입계획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,295만 원, 기타수입(기부금 수입) 7,185만 3천 원을 증액하고, 이자수입 128만 6천 원을 감하였음.
-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 1억 8,351만 7천 원 을 증액하였음.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%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,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-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액(4,943만 3천원) 보다 371.2%, 1억 8,351만 7천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.
- 다만, 2025년까지 기금사업 발굴 후 기금사업계획(안) 변경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,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음.
- 서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한 점을 고려해서, 비록 소액일 지라도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하고,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기부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